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34 발의연월일: 2025. 5. 9.

발 의 자: 박수현 · 윤종오 · 이개호

한정애 · 김윤덕 · 양부남

조계원 • 윤후덕 • 박용갑

이건태 · 신영대 · 이연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10조 및 제111조에서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되는 압수수색에 대해 책임자의 승낙을 요구하면서도, 국가의 중대한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있음.

그런데 해당 현행법 규정상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문구의 추상성·불명확성으로 인해, 해당 규정이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혐의에 대해서조차 수사를 저해하거나, 영장 집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규정의 문언 역시 승낙이 원칙이고 불승낙은 예외라는 입법취지를 잘 나타내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의 경우 및 국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에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하여 형사사법질서를 올바로 하고 헌정질서 수호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및 제111조).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 및 제1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의 승낙을 요하나, 이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에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 1. 그 책임자가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또는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혐의로 압수 또는 수색과 관련한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피고인인 경우
 - 2. 국회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경우의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해서는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책임자의 승낙을 요하나, 이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낙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수 또

는 수색에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 1.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책임자가 「형법」 제2편제1 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또는 「군형법」 제2편제1 장(반란의 죄)의 혐의로 압수 또는 수색과 관련한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피고인인 경우
- 2. 국회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第110條(軍事上 秘密과 押收) ① 軍事上 秘密을 要하는 場所는 그 責任者의 承諾없이는 押收 또는 搜索할 수 없다.

② 前項의 責任者는 國家의 重 大한 利益을 害하는 境遇를 除 外하고는 承諾을 拒否하지 못 한다.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군
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의 승낙을 요하나, 이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낙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에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1. 그 책임자가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 (외환의 죄) 또는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혐의로 압수 또는 수색과 관련한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피고인인 경우

2. 국회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

 公務所가 職務上의 秘密에 關한 것임을 申告한 때에는 그所屬公務所 또는 當該 監督官公署의 承諾없이는 押收하지못한다.

② 所屬公務所 또는 當該 監督 官公署는 國家의 重大한 利益 을 害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承諾을 拒否하지 못한다. 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 임을 신고한 경우의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해서는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책임 자의 승낙을 요하나, 이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낙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압수 또는 수색에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 1.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책임자가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 제2장(외환의 죄) 또는 「군 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혐의로 압수 또는 수색 과 관련한 수사의 대상이 되 거나 피고인인 경우
- 2. 국회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